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담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②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민간참여형 분양주택입니다.
 - 청약 신청 시 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②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의한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분양형별 청약 가능 주택형			
국민주택(민주자모집공고 적용)	민영주택		전용면적 106㎡A-T
	전용면적 74㎡A-B, 84㎡A-T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시,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2(금요일)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거주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임)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지역영양, 형제자매방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여수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3.10.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수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비투과지역 및 비청약과외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당첨자로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주택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주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신청자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신청자는 계약이후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1년이 적용되며,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유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분	적용기간(당첨절차로부터)	관련 법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1항제4호)	대당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유무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미적용	

※ 전매 금지, 거주 의무, 대당제한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2에 의거 예비(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 중복신청 가능하며, 일부 모든 당첨될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당첨순으로 합니다.
 ※ 단,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이며 부부를 제외한 세대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단,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이며 부부를 제외한 세대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 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특별공급 당첨자가(관추천 특별공급 제외)의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되며, 2024.03.25.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10~20퍼센트 가산하여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년 04월 22일(월)	2024년 04월 23일(화)	2024년 04월 24일(수)	2024년 05월 03일(금)	2024년 05월 09일(목) ~ 2024년 05월 16일(목)	2024년 06월 09일(일) ~ 2024년 06월 15일(토)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초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초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17:00)	견본주택 방문 (10:00~17:0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02-3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죽림1지구 내 A2BL
 ■ 공급규모 : 민간참여형 분양주택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3층, 15개동 총 931세대 중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802세대
 [특별공급 600세대(기관추천 120세대, 다자녀가구 80세대, 신혼부부 80세대, 생애최초 120세대, 노부모부양 40세대, 신생아 160세대 포함) 및 부대부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 면적(이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계													
공공분양 주택	000147	2024	01	074.9136A	74A	74.9136	22.375	97.2891	51.3222	148.6113	55.0555	20	3	1	3	3	1	5	16	4	2										
												02	074.9805B	74B	74.9805	22.1383	97.1188	51.3681	148.4868	55.1047	22	3	1	3	3	1	5	16	6	2	
												03	084.9656A	84A	84.9656	25.2119	110.1775	58.2087	168.3861	62.4430	342	52	30	32	52	14	75	255	87	19	
												04	084.9819B	84B	84.9819	25.2620	110.2439	58.2198	168.4637	62.4549	133	23	16	16	21	8	20	104	29	7	
												05	084.9723C	84C	84.9723	25.2580	110.2303	58.2133	168.4436	62.4479	75	8	8	5	10	4	20	55	20	4	
												06	084.9715D	84D-1	84.9715	25.1265	110.0980	58.2127	168.3107	62.4473	7	-	-	-	-	-	-	-	-	-	-
												07	084.9884E	84E	84.9884	26.3559	111.3443	58.2243	169.5686	62.4597	56	8	8	5	10	4	15	50	6	3	
												08	084.9789F	84F	84.9789	25.0022	109.9811	58.2177	168.1988	62.4527	132	23	16	16	21	8	20	104	28	7	
												09	084.9772G	84G	84.9772	25.0273	110.0045	58.2167	168.2211	62.4515	6	-	-	-	-	-	-	-	-	-	
												10	084.9916H	84H	84.9916	25.0304	110.0220	58.2264	168.2485	62.4621	2	-	-	-	-	-	-	-	-	-	
												11	084.9530J	84J	84.9530	25.2131	110.1661	58.2001	168.3661	62.4337	5	-	-	-	-	-	-	-	-	-	
												12	084.8606K	84K	84.8606	28.3995	113.2601	58.1367	171.3968	62.3658	2	-	-	-	-	-	-	-	-	-	
합 계											802	120	80	80	120	40	160	600	202	44											

※ 상기 타입(약식표기) 중 전용 84D-1, 84D-2는 타입별 데라스 공간 위치 및 공간이 상이하니 청약 신청 시 주택형 084.9715D(84D-1, 84D-2)로 단일 주택형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타입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 등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를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27년 04월로 예정 되어 있으나, 건축공정 및 (가)정리조 개교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라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15일 이내	2024.10.15	2025.03.14	2025.08.14	2026.01.15	2026.05.15	2026.09.15	입주자정일				
74A	20	201동 4호	3층	2	107,828,900	293,171,100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109,980,100	299,019,900	409,000,000	10,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112,400,200	305,599,800	418,000,000	10,000,000	3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114,551,400	311,448,600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115,089,200	312,910,800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102,988,700	280,111,300	383,000,000	10,000,000	2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107,560,000	292,440,000	400,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109,980,100	299,019,900	409,000,000	10,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112,400,200	304,868,700	417,000,000	10,000,000	3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114,551,400	311,448,600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114,282,500	310,717,500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16,971,500	318,028,500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22,080,600	331,919,400	454,000,000	10,000,000	3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124,769,600	339,230,400	464,000,000	10,000,000	3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39,200,000								
127,189,700	345,810,300	473,000,000	10,000,000	3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128,534,200	349,465,800	478,000,000	10,000,000	3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43,400,000								
129,878,700	353,121,300	483,000,000	10,000,000	3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44,900,000								
130,416,500	354,583,500	485,000,000	10,000,000	3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116,971,500	318,028,500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22,080,600	331,919,400	454,000,000	10,000,000	3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124,769,600	339,230,400	464,000,000	10,000,000	3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39,200,000								
127,189,700	345,810,300	473,000,000	10,000,000	3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128,534,200	349,465,800	478,000,000	10,000,000	3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43,400,000								
129,878,700	353,121,300	483,000,000	10,000,000	3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44,900,000								
130,416,500	354,583,500	485,000,000	10,000,000	3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114,551,400	311,448,600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116,971,500	318,028,500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22,080,600	331,919,400	454,000,000	10,000,000	35,40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라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15일 이내	2024.10.15	2025.03.14	2025.08.14	2026.01.15	2026.05.15		2026.09.1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12동 3호	2층	1	118,047,100	320,952,900	439,000,000	10,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3층	1	123,156,200	334,843,800	458,000,000	10,000,000	3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37,400,000				
	4층	1	125,576,300	341,423,700	467,000,000	10,000,000	3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5-9층	5	128,265,300	348,734,700	477,000,000	10,000,000	3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10-19층	7	129,609,800	352,390,200	482,000,000	10,000,000	3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20층	1	130,147,600	353,852,400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22층	1	130,954,300	356,045,700	487,000,000	10,000,000	3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23층	1	131,492,100	357,507,900	489,000,000	10,000,000	3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46,700,000				
	213동 3호	1층	3	114,282,500	310,717,500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2층	3	116,702,600	317,297,400	434,000,000	10,000,000	3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3층	3	121,811,700	331,188,300	453,000,000	10,000,000	3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4층	3	124,500,700	338,499,300	463,000,000	10,000,000	3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214동 3호	5-9층	15	126,920,800	345,079,200	472,000,000	10,000,000	3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41,600,000			
		10-17층	24	128,265,300	348,734,700	477,000,000	10,000,000	3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18-19층	6	129,609,800	352,390,200	482,000,000	10,000,000	3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20층	3	130,147,600	353,852,400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84G	6	210동 3호	4	130,954,300	356,045,700	487,000,000	10,000,000	3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212동 3호	18층	1	130,954,300	356,045,700	487,000,000	10,000,000	3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84H	5	211동 3호	12층	1	130,954,300	356,045,700	487,000,000	10,000,000	3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18층	1	132,298,800	359,701,200	492,000,000	10,000,000	3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84I	5	210동 3호	15층	3	130,954,300	356,045,700	487,000,000	10,000,000	3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212동 3호	21층	2	132,298,800	359,701,200	492,000,000	10,000,000	3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84J	2	201동 2호	15층	2	136,332,300	370,667,700	507,000,000	10,000,000	4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52,100,000				
84T	2	201동 2호	14층	2	136,063,400	369,936,600	506,000,000	10,000,000	4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202동 2호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분양대금 납부개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개좌	광주은행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개좌		9624-0100-25842	전남개발공사(죽림공동주택)

※ 공급대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개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광주은행 1127-020-320942 예금주: 전남개발공사)로 관리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전남개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특별(유상업선) 납부개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10.15.	입주지정기간
74A	7,800,000	780,000	780,000	6,240,000
74B	8,850,000	885,000	885,000	7,080,000
84A	8,640,000	864,000	864,000	6,912,000
84B	7,230,000	723,000	723,000	5,784,000
84C	7,240,000	724,000	724,000	5,792,000
84D-1	7,340,000	734,000	734,000	5,872,000
84D-2	7,340,000	734,000	734,000	5,872,000
84E	7,510,000	751,000	751,000	6,008,000
84F	7,430,000	743,000	743,000	5,944,000
84G	7,430,000	743,000	743,000	5,944,000
84H	7,430,000	743,000	743,000	5,944,000
84T	11,460,000	1,146,000	1,146,000	9,168,000
84J	8,975,000	897,500	897,500	7,180,000

※ 발코니 확장시 제공품목 등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어 계약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개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발코니 확장 비용 계약금 납부개좌	광주은행	9625-0100-21635	전남개발공사
중도금, 잔금 납부개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개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광주은행 1127-020-320958 예금주: 전남개발공사)로 관리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3 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우선공급)	2순위(전여공급)
무주택 중복청약, 재정첨제한 등 판단범위	본인 및 세대구성원							
청약통장	필요 (6개월, 6회 이상)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1순위 (6개월, 6회 이상)	필요 1순위 (6개월, 6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1순위 (6개월, 6회 이상)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요건	-	-	-	적용	-	-	-	-
소득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의 경우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의 경우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의 경우 200%)	-	-
자산 (부동산, 자동차)	-	-	(세대)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	-	-	-	-

4 신청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여수시 고시 제2021-40호에 의거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여수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또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에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점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① 해당지역	- 공고일 현재 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3.10.12.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 거주(2023.10.12.에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여수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또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

※ 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 낙첨될 경우, 여수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또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 지역우선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상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생국적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시 발허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여수시 거주기간 선정 시 여수시 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우수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동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여 자산상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원만한 자산보유기준으로 선정 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행(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러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신청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사항을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head><tr><th>건축물 종류</th><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tr></thead><tbody><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rowspan="2">건물</td><td>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td></tr><tr><td></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td></tr></tbody></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차·개발용지시가)에 면적씩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같은 농업인명 및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수용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삼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 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인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2024.03.25.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10~20퍼센트 가산하여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소득기준

■ 적용대상: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초소득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출처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참조)'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9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초과	9,105,863~14,009,018	10,723,008~16,				